

2021년 5월 21일 결정 2021년 6월 3일 변경 2021년 6월 7일 변경  
2021년 6월 17일 변경 2021년 7월 8일 변경

##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조치 관련 오кина와현 대처방침

### 실시내용

정부의 긴급사태조치기간 **재연장**을 바탕으로, 이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사람과 사람의 접촉 기회를 철저하게 줄이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현민·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 요청을 실시함.

### 구역

오кина와현 전역

### 기간

2021년 5월 23일(일)~8월 22일(일)

※7월 8일 정부가 긴급사태조치의 기간연장을 결정, 이에 따라 같은 날 오кина와현 대처방침을 변경

※감염상황 및 의료제공체제의 개선 및 긴급사태조치의 조기 해제를 목표로 함

## 【현민 및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법 제45조 제1항 : 긴급사태조치로서의 요청

### 외출자제요청 <외출 및 접촉기회를 철저히 줄입니다>

◆ 낮 시간도 포함해 불필요한※외출과 이동을 자제할 것.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을 피할 것  
(법 제45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의 통원, 의료·의약품·생활필수품의 구매, 필요에 의한 출근, 야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과 건강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 주십시오.

◆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할 것

장보기는 대표로 1명이 가는 등 혼잡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 제45조 제1항)

◆ 도도부현간의 이동·왕래는 자제할 것 (법 제 45조 제 1항)

온라인 회의 등을 활용해 출장은 삼갈 것.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3일 정도 전)에 PCR검사를 받고, 현지에서의 회식을 피할 것. 오키나와에 돌아온 뒤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으며 1주일 동안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식사 자리를 피할 것

◆ 이도(離島)와의 왕래는 자제할 것 (법 제45조 제1항)

※의료기관으로의 통원, 식료·의약품·생활필수품의 구매, 필요에 의한 출근 및 백신 접종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도와의 왕래는 삼가 주십시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도에 방문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계모임, 비치 파티 등 식사로 이어지는 행사 등은 자제할 것 (법 제24조 제9항)

식사로 인한 감염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바베큐 모임에서의 감염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은 식사로 이어지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 내 거주자는 법 제24조 제9항에 따라, 현민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요청내용

**【현민 및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법 제45조 제1항 : 긴급사태조치로서의 요청

요청내용

**식사시의 요청**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이나 휴업 요청 또는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철저히 피할 것 (법 제 45조 1항)

또한, 기간 중에는 시간에 관계 없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점포에 주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류를 가게로 반입하지 말 것

◆노상·공원 등에서 단체로 음주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피할 것 (법 제45조 제1항)

◆회식은 함께 사는 가족과 소수 인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실시하며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의 이용을 특히 자제할 것 (법 제24조 제9항)

(감염방지대책 미실시 예 : 점원이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용 설비가 없음, 환기가 잘 안됨, 자리 간격이 좁음, 아크릴 판 미설치, 입점 시 체온검사·마스크 착용 요청이 없음)

◆음식점이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법 제24조 제9항)  
체온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간격을 둔 자리 등 점포가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해 주십시오.

**오kina와현 의료비상사태선언** (법 제24조 제9항)

●불필요한 구급검진은 삼갈 것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엔 진료소 등 주치의에게 검진 받기, 발열시엔 현 콜센터를 이용  
<오kina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콜센터 : 098-866-2129>

●매일 체온 검사 등으로 건강을 관찰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통근, 통학, 외출하지 않을 것

※현 내 거주자에게는 법 제 24조 제 9항에 따라, 현민과 같은 내용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 【방문자(오키나와로 방문하는 것을 검토중인) 여러분께】

기 간

2021년 5월 23일(일)~**8월 22일(일)**

협력내용

### 방문 자제

◆ **델타 변이주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태조치기간 중에는 타 현에서 방문하는 것을(귀성을 포함) 삼가 주십시오.

부득이 방문하게 된 경우에는, 오키나와현 입역 전(3일 정도 전부터 직전까지)에 확실하게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판정을 받아 주십시오.

또한, 정부에서 여름 휴가 기간동안 하네다 공항 등에서 출발해 오키나와현에 도착하는 항공편 탑승객 중, 희망자에게 무료로 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문 전에 검사를 받지 못한 분은 나하공항, 미야코공항, 시모지시마공항, 신이시가키공항, **구메지마공항(※1)** 도착 시에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2)**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므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또한, 오키나와에 오신 뒤 현민과 식사하는 등의 접촉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자 또한 현 내에서는 거주자로서 법 제24조 제9항에 의해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낮 시간을 포함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은 삼가 주십시오.

※1 구메지마공항은 7월 16일부터 운용개시예정

※2 나하공항에서는 7월 중에 항원검사를 운용할 예정

# 【음식점에의 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법 제45조 제2항 : 긴급사태조치로서 요청

<p><b>기 간</b></p>	<p>2021년 5월 23일(일)~<b>8월 22일(일)</b></p>
<p><b>대상시설</b></p>	<p>〔음 식 점〕 음식점 (배달 · 포장을 제외)          〔유흥시설 · 결혼식장 등〕 바, 노래방 · 결혼식장 등 식품위생법 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및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방 점포</p>
<p><b>요청 · 협력 의뢰 내용</b></p>	<p><b>【주류 또는 노래방 설비를 제공(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음식점 포함)하는 음식점(주류 및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및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방 점포】</b>  <b>◆휴업요청(주류 · 노래방 설비 제공 정지)(법 제45조 제2항)</b>  <b>【상기 이외의 음식점(배달 · 포장을 제외)】</b>  <b>◆영업시간단축요청 5시부터 20시까지(주류 · 노래방 설비 제공 정지)(법 제45조 제2항)</b></p> <p><b>◆다음 감염방지대책을 실시(법 제45조 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 검사 장려    · 입장자 정리 · 유도    · 발열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자의 입장을 금지</li> <li>· 손 소독 설비 설치    · 사업을 행하는 장소의 소독    · 마스크 착용 외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알림</li> <li>·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의 입장 금지(퇴장을 포함)</li> <li>· 시설 환기를 행함    ·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1m 이상 거리를 확보</li> </ul> <p><b>◆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법 제24조 제9항)</b>  <b>◆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 촉진 순회사업에 협력 (법 제24조 제9항)</b>  <b>◆결혼식장은, 음식점과 같은 내용의 요청에 따를 것.(법 제45조 제2항) 또한 가능한 한 1.5시간 이내로, 소수 인원(50명 또는 50% 중 적은 쪽)으로 개최할 것(부탁)</b></p> <p>※숙박객 등 지정객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호텔 라운지 등)은 <b>6/7</b> 부터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45조 제2항)          ※<b>7월 12일</b>부터 협력에 응한 점포도 협력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b>7/12~8/22</b> 중 모든 기간 협력에 응한 경우에 지급)          (법 제45조 제2항)</p>

## 【행사 개최시의 요청 · 부탁】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기 간

2021년 5월 23일(일)~**8월 22일(일)**

※7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여,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계도기간 종료 전에 판매가 시작된 티켓은 수용 정원 1,000명 이하이며 **실내수용률 50% 이내** 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위 계도기간 뒤에는 **수용 정원 또는 수용률 상한을 넘는 티켓을 새로 판매하지 않는다.**

요청내용

◆**전국적인 이동을 동반하는 행사 또는 대규모 행사(1,000명 초과)는 연기 또는 중지를 요청한다. (무관객, 온라인 개최의 경우는 제외)(법 제24조 제9항)**

◆**수용 정원이 1,000명 이하인 행사는 수용률 50% 이내로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단, 가능한 경우에는 무관객, 온라인 개최, 규모 축소, 분산개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를 요청한다.(법 제24조 제9항)**

※각종 시험, 채용활동 등 온라인 개최가 어려운 경우 및 업무상 반드시 필요해 도저히 연기가 어려운 행사는 제외.

※**전국적 프로스포츠나 국가적 대회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대처방침의 규모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사  
실시 시  
유의사항

◆주류를 제공(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부탁)

◆영업시간은 21시까지(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은 제외) (법 제24조 제9항)

◆행사 개최에 있어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법 제24조 제9항)

◆프로그램 전후의 3밀(3密) 및 회식 회피를 위한 방책을 철저히(법 제24조 제9항)

◆정부 접촉확인앱(COCOA),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 대책 퍼스널 서포트 (RICCA) 도입,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추적대책을 철저히(법 제24조 제9항)

◆행사 종료 후 뒤풀이 등을 삼가도록 요청할 것(부탁)

**【사업자 · 경제계への 요청 · 부탁】**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기간** 2021년 5월 23일(일)~8월 22일(일)

**要請  
内容**

- 회의, 설명회, 영업활동의 횟수와 인원을 70% 감소(횟수 · 인원 수)
- ◆직장 출근에 대해, 재택근무(텔레워크)를 활용하거나 휴가 취득 촉진 등으로 출근자수의 70% 삭감을 목표(부탁)
-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출근, 자동차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저감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부탁)
- ◆20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을 철저히 자제할 것과 동시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부탁)
- ◆직장이나 점포 등에서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할 것(법 제24조 제9항)
  - 종업원의 컨디션 관리를 철저히 하며,(출근시의 체온 검사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원은 쉬게 할 것
  - 휴식장소나 식사장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할 것
  - 사원 기숙사 등 공동생활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
  - 사업소의 환기에 힘쓸 것
- ◆자사의 종업원에게 휴업 요청 ·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의 이용을 삼가도록 요구 (법 제24조 제9항)
- ◆회의, 집회, 설명회, 연수, 학회 등의 개최를 연기 · 온라인 · 규모 축소 · 분산개최 할 것 (법 제24조 제9항)
- ◆자사의 종업원에게 친목 모임, 계모임, 비치 파티 등을 삼가도록 요구할 것 (법 제24조 제9항)
- ◆야외조명(범죄대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외)을 밤 8시 이후 야간 소등할 것(부탁)

※ 실시상황을 적극적으로 공표해 주십시오

## 【교통사업자에의 요청 · 부탁】

### 요청 · 협력 의뢰내용

- ◆ 주요 터미널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할 것 (부탁)
- ◆ 항공, 선박,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정해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 (법 제24조 제9항)

## 【각 시정촌과의 연계 방침을 실시】

### 의뢰내용

- ◆ 방재무선, 홍보차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감염방지대책을 홍보, 자치회 등에 협력 의뢰
- ◆ 음식점 등의 순회(감염방지대책 부탁, 휴업요청 · 영업시간단축요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력히 요청)
- ◆ 각종 시설, 공원 등의 관리자로서 노력(노상, 공원에서 단체로 음주하는 것 등에 대해 주의 환기 하는 것을 포함)
- ◆ 발열시의 의료검진방법을 홍보(불필요한 구급검진 억제,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콜센터 098-866-2129)
- ◆ 보육소 등  
보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되, 감염이 확산중인 지역에는 가정보육에의 협력 또는 임시휴원 등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도록 의뢰한다. 단, 의료종사자와 같이 사회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종사하여, 업무를 쉴 수 없는 보호자에게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교에의 요청】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p>기 간</p>	<p>2021년 5월 23일(일)~<b>8월 22일(일)</b></p>
<p>요청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의 감염상황을 고려해, 시차등교 등을 검토한다.</b> 초·중학교는 현립학교의 대응을 참고로,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시정촌교육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한다.</li> <li>◆ 위생관리매뉴얼을 토대로 학교교육활동, 학교 축제에서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li> <li>◆ 학교 행사(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과 숙박학습 등)를 연기, 축소한다.</li> <li>◆ 아동과 학생에게 통학 이외의 불필요한 외출을 철저히 자제하도록 하며,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한다.</li> <li>◆ 학급 폐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활용해 학습을 보장한다.</li> <li>◆ <b>취업활동, 진학 등과 관련된 활동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 뒤 실시한다.</b></li> <li>◆ 학교 부활동은 원칙으로 한다. 단, 규슈·전국대회와 관련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나 <u>여름방학 기간중에는</u> 시간·인원을 제한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내 종목이면서 접촉을 동반하는 경기는 보다 엄격하게 다룬다.</li> <li>◆ &lt;학교 PCR 지원 팀&gt; 을 통해 신속한 PCR 검사 실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li> <li>◆ 대학, 전문대학 등은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분반 수업이나 큰 교실을 활용하는 등 밀(密)을 피한다</li> <li>◆ 대학은 학생들에게 <b>감염 위험이 높은 아래 행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업요청, 영업시간단축이 요청된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것</li> <li>· 다수 인원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나, 바베큐 또는 친구의 집에서 음주하는 것</li> </ul> </li> </ul>

**【음식점 이외의 시설에의 요청 · 협력 의뢰①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 시설】**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기 간** 2021년 5월 23일(일)~**8월 22일(일)**

요청 · 협력 의뢰 내용	대상시설 (특조법시행령 제11조)	상세 내용	요청 · 협력의뢰내용
	극장 등(제4호)	극장, 관람장, 영화관, 연예장, 천체투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5시부터 21시까지로 단축(법 제24조 제9항)</u></li> <li>■ <u>수용 정원 1,000명 이하 및 수용률 50% 이내(법 제24조 제9항)</u></li> <li>■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법 제24조 9항)</li> <li>■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릴 것(부탁)</li> <li>■ 주류 및 가라오케 설비를 제공(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부탁)</li> <li>■ 영화 상영은 행사와 같이 21시까지로 단축(1,000㎡초과는 법 제24조 제9항)</li> <li>■ 행사 개최 이외의 경우에는 20시까지로 단축(1,000㎡초과는 법 제24조 제9항)</li> <li>■ 결혼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음식점과 같은 요청에 따른 것(법 제45조 제2항) 가능한 한 짧은 시간(1.5시간 이내), 소수 인원(50명 또는 50% 중 작은 쪽)으로 개최할 것(부탁)</li> </ul>
	집회장 또는 공회당(제5호)	집회장, 공회당	
	전시장(제6호)	전시장, 대여회의실, 문화회관, 다목적 홀	
	호텔 또는 료칸(모임을 위해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제8호)	호텔 · 료칸(모임을 위해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오키나와현의 요청에 응한 대규모 시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초과)등 협력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현 홈페이지(대규모시설에 대한 협력금)에서 확인해 주십시오.(대상 외 시설 있음)

**【음식점 이외의 시설에의 요청 · 협력 의뢰②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 시설】**    법 제24조 제9항: 협력요청

**기 간**    2021년 5월 23일(일)~**8월 22일(일)**

	대상시설(특조법시행령 제11조)	상세 내용	요청 내용
<b>요청 · 협력의뢰 내용</b>	상업시설 (생활필수물자를 제외) (제7호)	대규모 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식품, 의료품, 의약품, 잡화, 연료 등 생활필수물자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닥면적 1,000㎡ 초과 시설)영업시간을 5시부터 20시 까지로 단축(법 제24조 제9항)</li> <li>■(바닥면적1,000㎡ 이하 시설)영업시간을 5시부터 20시까지로 단축(부탁)</li> <li>■입장자 정리유도를 철저히(법 제24조 제9항)</li> <li>■세일 등 손님을 모으는 행사를 연기 또는 중지(법 제24조 제9항)</li> <li>■정리유도 상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것(부탁)</li> <li>■주류 및 가라오케 시설을 제공(이용자가 주류를 점내로 반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것(부탁)</li> <li>■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1시까지로 단축(법 제24조 제9항)</li> <li>■푸드코트에서는 자리와 자리의 간격을 1m 이상 두거나 아크릴판 등을 설치할 것(법 제24조 제9항)</li> <li>■게임센터나 스포츠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입장 전의 체온 검사와 정기적인 소독을 행할 것(법 제24조 제9항)</li> </ul>
	운동 · 유흥시설(제9호)	체육관, 스포츠클럽, 빠칭코 가게, 게임 센터 등(실내 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제10호)	박물관, 미술관 등(도서관을 제외)	
	유흥시설(제11호)	성풍속점, 데리헤루, 비디오방, 라이브하우스, 장외마(륜 · 정)권장	
	서비스업(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외)(제12호)	대형 대중목욕탕, 에스테틱 살롱, 사진관 등(미용실, 세탁소, 부동산 등 생활필수서비스를 제외)	

※오키나와현의 요청에 응한 대규모 시설(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초과) 등에 대한 협력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현 홈페이지(대규모시설 등에 관한 협력금)에서 확인해 주십시오.(대상 외 시설 있음)

### 【음식점 이외 시설에의 요청 · 협력의뢰③】

법 제24조 제9항 : 협력요청

기 간	2021년 5월 23일(일)~ <b>8월 22일(일)</b>	
요청 · 협력의뢰 내용	대상시설(특조법시행령제11조)	요청 · 협력의뢰
	유치원, 간호노인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제한(부탁)</li> <li>· 적절한 감염방지대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법 제24조 제9항)</li> </ul>
	장례식장(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제공(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포함)을 중지(부탁)</li> </ul>
	도서관(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자의 정리유도를 철저히 (법 제24조 제9항)</li> </ul>
	인터넷 카페 · 만화 카페※, 대중목욕탕, 미용실, 전당포, 의상대여점, 세탁소 등(제 12호) ※인터넷 카페 · 만화카페 중 야간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자의 정리유도를 철저히(법 제24조 제9항)</li> <li>· 점포에서의 음주로 이어지는 주류 제공 중지(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포함) 및 가라오케 시설 사용 자제(부탁)</li> </ul>
자동차교습소, 학원, 영어회화교실, 음악교실 등 (제 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부탁)</li> </ul>	
공공시설	<p>■ <b>현립시설(실내)</b>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제10호)의 시설에서 감염방지대책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b>개관시간을 20시까지로 하며, 수용률을 50% 이내로 하는 입장제한을 실시한다.</b> 시정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요청한다.</p>	